

# 宋代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 『名公書判清明集』을 중심으로 —

남현정\*

## 목 차

- I. 머리말
- II. 刺字의 규정과 적용
- III. 刺字에 대한 관관의 인식과 처벌대상
- IV. 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송대 형벌제도의 특징인 刺字刑의 내용과 시행상의 특징, 그에 따른 인식을 13세기 南宋의 관례집인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오대시기에 군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실시되었던 刺字의 영향으로 송대에는 형벌로서의 刺字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에 사형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刺配의 일부분을 구성했던 刺字는 眞宗과 神宗대를 거치면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고 남송대에 이르러 刺字의 크기에 관한 규정과 刺字가 행해지는 부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남송대에는 刺字와 관련된 해당 조항의 확대로 刺字를 당하는 죄인이 증가하여 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다. 결국 宋初의 엄형주의적 法意가 南宋대에 점차 완화되어 法意

\* 경북대학교 석사(역사교육전공), woojuin337@hanmail.net.

가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刺字된 죄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서리로, 이는 송대 지배층의 서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刺字, 송대 형벌, 刺配, 黥吏,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 黥, 笞吏

## I. 머리말

송대(宋代)의 형벌제도는 기본적으로 笞, 杖, 徒, 流, 死의 당률적 五刑을 따르고 있다.<sup>1)</sup> 그러나 당말(唐末)과 오대(五代)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건국된 송은 형벌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折杖法과 編管, 刺配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형벌의 체계에 편입하였다. 이에 송대 형벌 체계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로 折杖法의 시행과 肉刑의 부활 및 부가형의 광범위한 적용, 사형에 있어서 陵遲處死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sup>2)</sup>

折杖法<sup>3)</sup>은 死刑을 제외한 笞, 杖, 徒, 流刑의 당률적 법정형을 형벌 집행 시에 脊杖 또는 臀杖으로 환산하여 집행하는 규정으로, 형벌의 전체적인 절감을 가져왔다. 流刑의 경우 脊杖과 配役<sup>4)</sup>으로 환산되어 流刑의 추방형적 성격이 사라졌고, 徒刑의 경우 脊杖만 집행하고 석방하였으므로 노역형적 성격이 사

1)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刑法』(東京大學出版會, 1959); 郭東旭, 「宋代的刑罰制度」, 『宋代法制研究』(河北大學出版社, 1997); 川村康, 「宋代折杖法初考」, 『早稻田法學』 65-4(1990).

2) 張晉藩, 한상돈 외 譯, 『중국법제사』(소나무, 2006), 591-593면.

3) 折杖法의 성격을 둘러싸고 부가형으로 보는 견해와 대용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중국 교과서류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薛梅卿에 의해 비판받았다. 그에 따르면, 만약 부가형이라면 ‘折杖法’이 아니라 ‘加杖法’이라 불러야 하며 특히 태장에 있어서 ‘절감’의 의미가 사라질뿐 아니라 ‘決脊(臀)杖\*\*’ 뒤에 붙은 ‘放’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용형설을 취하면 위의 모순이 사라지며 ‘放’은 장 집행 후 즉시 석방을 나타내어 ‘절감’의 의의를 명확히 한다고 보았다. 최근에 川村康도 ‘대용형’의 입장에서 折杖法을 정리하였으며, 周密처럼 최근 중국 교과서류에서도 대용형설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薛梅卿, 『北宋建隆‘折杖法’辨析』, 『中國政法大學學報』(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83); 周密, 『宋代刑法史』(法律出版社, 2002); 川村康, 앞의 글.

4) 建隆 4년에 제정된 折杖法은 척장이나 둔장과 함께 배역이 규정되어 있으나 휘종 대관 2년과 정화 8년에 개정되어 배역 규정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장타수가 감소하였다. 여기서는 『宋史』 卷199, 「刑法志」 1을 바탕으로 절장이 처음 제정된 건隆 4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배역’을 언급하였다.

라졌다고 할 수 있다.<sup>5)</sup> 編管은 죄인을 군대와 같은 조직에 편입시켜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符籍에 기입하여 감독하고 관리하는 비교적 관리의 정도가 느슨한 형벌이다.<sup>6)</sup> 折杖의 경우 대부분 杖을 집행한 후에 즉시 석방이 가능하였고 편관은 추방형이라고는 하나 또한 6년이 지나면 귀환이 가능하여 죄인에 대한 낙인효과가 일시적이며 형벌의 특별예방주의적<sup>7)</sup>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 刺配는 折杖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死刑에 대해 홀형적 성격을 가지는 형벌로 절장이나 편관보다 훨씬 정도가 강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死罪를 면제해 주는 대신 장형 집행을 하고 얼굴이나 기타 신체 부위에 刺字를 하며, 다른 곳으로 配流를 보내 배류지에서 군역이나 요역에 복역시키는 것을 포괄하는 형벌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死刑에 대한 減刑이었던 刺配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형이 아닌 죄인들에게도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刺配의 성격도 홀형적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고 가혹한 성격을 보인다고 하겠다. 배류·배군을 포함하는 刺配는 折杖法으로 인해 척장으로 환산집행되어 추방형적 성격이 상실된 송의 流刑을 대체하여 추방형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刺配는 송대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시켜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왔고 송대인의 의식과 행동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중에서 刺字는 죄인의 얼굴이나 다른 신체에 문자나 특정 표시를 入墨하는 형벌로써, 죄인에 대한 낙인기능의 절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대의 刺字는 고대 肉刑<sup>8)</sup>의 하나에 해당하는 墨刑이 부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島田正郎은 노역형이 후퇴한 원인으로 질이 나쁜 노동력을 대신하여 고용이나 청부에 의해 양질의 노동력을 얻기 쉽게 된 까닭도 있고, 또 죄수의 도망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島田正郎, 임대회 譯, 『아시아법사』(서경, 2000), 92~93면.

6) 辻正博, 『宋代編管制度考』, 『東洋史研究』 61-3(東洋史研究會, 2002), 452면.

7) 특별예방주의란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육하고 교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는 형벌이론을 의미한다. 배종대, 『형법총론』(홍문사, 1999), 19~30면.

8) 肉刑은 宮刑(남성거세/여성유폐), 刖刑(발자르기), 劓刑(코베기), 黥刑(문신)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死刑을 합쳐 五刑이라고 하였다. 仁井田陞은 이러한 육형이 죄를 범할 때에

목형은 은대(殷代)에 시행되어 전한(前漢)초기까지 이어졌으나 전한의 문제(文帝) 13년(B. C. 167)에 폐지되고<sup>9)</sup> 대신笞杖刑이 나타났다.<sup>10)</sup> 이후肉刑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끝내刺字를 제외한肉刑은 실시되지 않았고,刺字만 송대에 이르러 공공의 제도로서 성립하였으며 창조까지 이어졌다.<sup>11)</sup> 이러한刺字는 북송(北宋)초기부터 실시되었고, 남송으로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 송은 중국에 있어서刺字의 전성기를 이루었다.<sup>12)</sup>

刺字에 관한 연구는 주로刺配라는 형벌을 연구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연구되었다. 송대刺配에 관한 연구는 형법과 형벌 전반을 아우르며 연구했던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가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본 사료를 정리하여刺字는配隸에 수반된 부가형으로 반드시 병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刺字는 중국형벌에 있어서의 일반예방주의적<sup>13)</sup>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하였다.<sup>14)</sup> 곽동욱(郭東旭)도 송대 형벌 전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刺配를脊杖,黥字,解送,配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刺字는黥字라고 표현하였고, 송대 도적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무겁게 행해진刺配法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남송후기로 갈수록刺配法이 강화되는 것은 계급적·민족적 모순이 격

---

사용한 신체의 일부에 직접 해악을 가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반영형,同害刑이라고 보았다(仁井田陞, 앞의 책(각주 2), 48~49면). 富谷至는 일반적으로 육형이라 함은 경형을 의미하며 刖刑, 劓刑 등은 특별히 중형에 처해질 때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모든 육형이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正刑으로서의 형은 경형이고, 나머지는 부가형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富谷至, 임병덕·임대희 譯, 『유골의 증언』(서경문화사, 1999), 67~70면.

- 9) 허부문, 『한·위·진의 육형논쟁 - 정치·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中國史研究』 15(中國史學會, 2001).
- 10) 曾我部靜雄, 「宋代軍隊の入墨について」, 『東洋學報』 24(1943), 72면.
- 11) 刺字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청의 光緒 31년(1905)이다. 曾我部靜雄, 「宋代の刺配について」, 『中國律令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71), 114면.
- 12) 曾我部靜雄, 위의 글, 115면.
- 13) 일반예방주의란 무거운 형벌을 이용하여 겁을 주는 것(威嚇)으로 일반인의 잠재적 범행을 막아 범죄를 예방한다고 보는 형벌이론이다. 배중대, 『형법총론』(홍문사, 1999), 19~30면.
- 14)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 刑法』(東京大學出版會, 1959).

화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5)</sup>

刺字를 중심에 둔 선구적 연구는 소가베 시즈오(曾我部靜雄)가 군대에서 입묵하는 제도를 연구하면서 전개하였다. 형벌로서의 黥刑은 군대의 입묵보다 늦은 오대의 後晉에서 시작되어 송대에 계속 시행되었으며 송대는 중국에서 입묵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하였다.<sup>16)</sup>

刺字에 관한 연구는 군대에서 이루어진 군인의 刺字와 죄수의 형벌로서의 刺字,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군대의 刺字 연구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sup>17)</sup>

송대의 형벌과 관련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刺字에 관한 연구는 刺配의 일부분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상적으로 연구된 감이 없지 않고 몇몇의 刺字와 관련된 연구도 군인의 刺字가 중심이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刺字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죄수의 형벌로서의 刺字는 대체로 기본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대 刺字의 구체적인 양상과 刺字에 대한 송대인의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刺字의 규정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刺字를 판결하는 판관의 인식과 처벌의 주요대상을 살펴보겠다. IV장에서는 刺字를 받은 사람들의 이후 모습을 통해 남송대의 刺字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刺字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판례집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송대는 『의옥집(疑獄集)』, 『절옥귀감(折獄龜鑑)』, 『당음비사(棠陰比事)』,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이하, 『청명집(清明集)』으로 약칭)과 같은 판례집이 간행되었는데 『청명집』은 판결원문이고, 나머지는 정사와 필기소설에서 취재한

15) 郭東旭, 『宋代法制研究』(河北大學出版社, 1997).

16) 曾我部靜雄, 「宋代の刺配について」, 『中國律令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71).

17) 周瑞熙, 「宋代的刺字和文身習俗」, 『中國史研究』1998. 1(中國史研究雜誌社, 1998); 魏峰, 「從刺字看宋代軍制」, 『史學月刊』(2005).

판례집이다.<sup>18)</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명집』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刺字의 규정과 적용

먼저 刺字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刺는 얼굴 등의 신체에 입묵하는 刑을 의미하는 것으로<sup>19)</sup> 부호를 刺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문자를 字하는 것이 많았으므로 ‘刺字’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용어는 五代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송대 이후 널리 사용되어 요(遼), 원(元), 명(明), 청(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쓰였다.<sup>20)</sup> 이러한 刺字는 『주례(周禮)』의 墨刑에서 기원한 것으로 黥이라고도 한다.<sup>21)</sup>

『청명집』의 판어를 통해 볼 때 남송대에도 刺字, 黥, 墨刑 등이 특별한 의미의 구분없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쓰이는 공식적인 표현은 ‘刺字’라 할 수 있겠으나 ‘黥刑’도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판어를 살펴보자.

(A-1) 호송되어 오는 것을 기다려 우선 刺配하기로 한다. 이어 당직 배군서들이 황덕을 호송해 왔고 어사대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으니 “황덕의 죄상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500리 주군에 刺配하라. 장가를 채우고 파양현의 옥으로 호송하고, 당국의 제간에게 맡겨 엄밀히 사정을 조사규명하게 하고, 2일 내에 보고하라. 본 건은 어사대가 송부한 1건이므로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황덕을 刺配한 주군의 지시를 받아보니, “지주(강남동로)로 刺配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황덕을 刺配하고 수갑을 채워 파양현의 옥으로 호송하고 제간에게 맡겨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이어

18) 高橋芳郎, 임대희 譯, 「名公書判淸明集」, 『法史學研究』 27(韓國法史學會, 2003), 354면.

19) 仁井田陞, 앞의 책(각주 14), 117면.

20) 仁井田陞, 앞의 책(각주 14), 665면.

21) 曾我部靜雄, 앞의 책(각주 16), 94면.

제간왕유림량이 보고를 하고 황덕의 공술조서를 첨부해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황덕은 처장 후 刺環 처분을 받은 한 州吏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의 원성을 들을만한 일을 감히 한 것이다. 황덕의 경배 날, 도로의 백성은 모두 이마에 손을 대고 하늘을 향해 쾌재를 불렀던 것이다. 삼척동자조차 벽돌기와을 던져, 이를 갈고 침을 뱉어 욕을 하는 모습. 백성은 그만큼 괴로웠던 것이다. 군이 본사가 그놈에게 경을 하지 않아도 도대판부직원이 반드시 경을 했을 것이다. ... 심한 것은 중앙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사의 통달문서를 가지고 놀고, 자기 집처럼 감옥을 드나들고, 우자처럼 옥관을 경시하기에 이른다. 죄악은 산과 같고, 경을 부과해도 이제는 늦은 감이 있다. 22)

(A-2) 도죄로 단죄하여 黥配하고 나쁜 무리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만, 낙성음이 수 무량의 자손임을 감안해 처벌을 가볍게 하기로 한다. 23)

(A-3) 김천이는 협박을 교사한 것이 34건, 부정 소득액 2640여관, 중염은 공갈을 교사한 것이 17건, 부정 소득액은 1300여 관이고, 모두 黥配하여 이후 본보기로 삼는다. 24)

(A-1)은 소송을 미끼로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가한 주리 황덕의 죄상을 보고 분노한 판관 채구현이 ‘黥刑도 이미 늦었다’ 라고 하며 刺配와 黥配, 黥, 刺環 등을 번갈아 쓰면서 판결한 것이다. (A-2)와 (A-3)도 일반적으로 刺配라는 표현을 써야 할 곳에 黥配라는 표현을 한 판어로 이러한 예를 통해 남송대 판관을

22)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罪惡貫盈」, “候到, 先與刺配 續據直日排軍徐達取押到黃德, 呈奉臺判, 黃德罪狀非一, 先刺配五百里州軍, 長枷押下鄱陽縣獄, 委本司正提幹嚴行究勘情節, 限兩日申, 此係御史臺送下名件, 不許苟簡. 尋具刺配黃德州軍呈, 奉臺判, 池州. 除已將黃德刺配, 枷送鄱陽縣獄, 委提幹根勘. 續據提幹汪儒林申, 具繳到黃德供招情款, 呈奉臺判. 黃德以一決脊刺環罪犯州吏, 而能使千里之民敢怒而不敢言, 黥配之日, 闔城民庶無不以手加額, 呼天稱快, 雖三尺童稚, 亦拋擲瓦, 切齒唾罵, 百姓不堪其若如此, 縱本司不黥之, 都大直院亦必黥之矣!…甚至拒天臺之命令, 玩監司之行移, 往來牢獄如私家, 輕視獄官如發蒙, 罪惡貫盈, 黥已晚矣!”

23) 『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爲惡貫盈」, “所當徒斷黥配, 爲姦民之戒, 以係修武郎之孫, 姑從末減, 勘杖一百, 編管南康軍”

24) 『清明集』 卷13 懲惡門, 誹徒, 「誹鬼訟師」, “金千二教唆脅取, 所犯三十四項, 入己贓二千六百四十餘貫, 鍾炎教唆脅取, 所犯一十七項, 入己贓一千三百餘貫, 並合黥配, 以爲將來之戒”

로 대표되는 사대부들은 刺, 黥 등을 별개의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漢文帝가 肉刑을 폐지한<sup>25)</sup> 이래, 肉刑은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체계에서 제외되었으나 刺字는 예외였다고 할 수 있다. 五代 시기부터 刺字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송대에 이르러 刺字는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체제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당말 황소의 난 이후, 상군 병사들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얼굴에 入墨을 하여 부대명을 새긴 것에서부터 실시되었고,<sup>26)</sup> 상군의 잠역부 대화가 진행되면서 죄인을 대상으로 刺字하여 배류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따르면 후진(後晉)의 天福년간(936~943)에 ‘刺面의 법’이 신설되었다고 쓰여져 있다.<sup>27)</sup> 또, 『오대회요(五代會要)』에도 후진 천복3년(938) 8월 左街史 韓延嗣가 백성 李延暉를 때려 죽여서 2년 반의 刑을 받았는데 ‘얼굴에 刺를 하고 화주에 유배를 보내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sup>28)</sup>

송은 이를 받아들여, 당대 중기의 流刑에 杖을 더하고 후진의 刺字와 流配가 합쳐진 형벌, 즉 刺配를 형벌의 체계에 편입시켰다. 북송초년에 刺配는 ‘減死一等刑’이라 하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에게만 실시하였다.<sup>29)</sup> 즉, 사형에 처해져야 하나 사형을 면제받은 죄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刺配였고 刺字는 刺配의 구성요소로서, 한대 이후 공식적으로 부활된 유일한 肉刑이라 할 수 있다.

태종(太宗) 때 백성이 절도해 “훔친 장물이 5관이면 杖刑으로 다스리고 黥面

25) 한 문제 13년(B. C. 167)에 태장령 淳于公이 죄를 범해 육형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딸 緹縈이 육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관비가 되어 아버지의 형벌을 속죄하고자 한다고 탄원한 것을 계기로 하여 육형이 폐지되었다. 西田太一郎, 친진호 외 譯, 『중국형법사연구』(신서원, 1998), 283~284면.

26) 辻正博, 「宋初の配流と配軍」, 『東洋史研究』 52-3(東洋史研究會, 1993), 333~334면.

27) 『文獻通考』 卷168 刑考5, 「宋太祖皇帝, 開寶時, 定刑制, 凡流刑四, 徒刑五, 流配, 舊制止於遠徒, 不刺面, 晉天福中, 始創刺面之法, 遂爲戡姦重典, 宋因其法」

28) 『五代會要』 卷9, 「晉天福三年八月, 大理寺奏, 左街韓延嗣, 爲百姓李延暉衝者, 本街使連喝不住, 毆擊致死, 準律, 鬪毆者, 原無殺心, 因相鬪毆而殺人者, 依故殺人者斬, 其韓延嗣, 準律合斬, 刑法統類節文, 絞刑決重杖一百處死 勅法寺定法, 比不因鬪毆受傷因辜內死者, 依殺人論, 蓋微相類, 且罪本條, 罪有可疑, 法當在宥, 徒二年半, 刺面配華州, 發運務收管」

29) 辻正博, 앞의 글(각주 26), 336면.



한 뒤 유배하라”는 법령이 있었다. 북송 초기에는 刺字에 관해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어, 죄인은 모두 얼굴 가득히 큰 글자를 刺字하여 형상의 훼손이 매우 심했다.<sup>30)</sup> 그러나 진종(眞宗) 大中祥符 6년(1013)의 조칙으로 인해 북송 전기의 刺字는 큰 刺字와 작은 刺字의 구분이 생겼으며, 配所의 명칭을 죄인의 얼굴 위에 새겨야 했다. 또, 군인이 刺字를 하는 규칙에 따라 문신하게 하였고, 다음 해 다시 조칙을 내려 刺字를 군대의 규칙과 같이 작게 하라고 하였다. 다만 재범일 경우 군인의 문신과 차이가 있게 했으며 죄질이 중악한 자는 글자를 크게 하고 두 뺨에 刺字하게 하여 군인과 차이를 두었다. 그 후 다시 규정을 두어 죄질이 엄중한 자도 한쪽 뺨에 문신을 하고 글자를 크게 하도록 했다.<sup>31)</sup> 이후, 신종(神宗) 元豐 8년(1085)에 비로소 도적죄에 대한 刺字의 부위·형상·大小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적질은 귀 뒤에 둥근 모양(고리모양)으로 刺字하고(刺環), 도형과 유형 판결을 받은 자는 방환(方環)을 하고, 장형이 더해진 사람은 원환(圓環)을 했으며, 3번 장형을 범한 죄인은 얼굴로 옮겨 새기되, 5분을 넘길 수 없다<sup>32)</sup>

『송사(宋史)』 刑法志의 이 규정은 죄목에 따른 刺字의 모양과 부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일단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귀 뒤에 環形이나 方形, 圓形으로 刺字한 후,<sup>33)</sup> 3번 이상 죄를 저지른 자부터 얼굴에 刺字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죄를 범하면 무조건 얼굴에 刺字를 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라 하겠다. 刺字하는 모양이나 부위에 관련해서는 『청명집』에서도 나타난다.

30) 郭東旭, 앞의 책(각주 15), 245면.

31) 魏峰, 앞의 글(각주 17), 48면.

32) 『宋史』 卷201, 「刑法志」, “凡犯盜, 刺環於耳後, 徒、流以方, 杖以圓. 三犯杖, 移於面, 徑不得過五分”

33) Brian E. Mcknight는 원형의 刺字 안에 사각형의 刺字를 한 것으로 해석했다. Brian E. Mcknight, *Law and Order in Song China*(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349.

(B-1) 담공·주팔·당홍중·곽통은 모두 평소에 나쁜짓에 가담한 자들이고 또한 모두 불법수입이 있다. 각각 장100대를 가하고 귀 뒤에 원모양으로 刺字(刺圓環)하겠다.<sup>34)</sup>

(B-2) 여자능은 척장으로 정하고 방환을 실시해야 한다.<sup>35)</sup>

(B-3) 지금 도둑질하려는 나쁜 마음이 예전과 같고, 종실 조맹온의 집에 고용되어 주인이 약해진 것을 기회삼아 그 딸을 피어 사통했다. … 이에 자환(刺環)은 면제하고 감장(勘杖)100대에 처하여, 문서를 보내 지계채(芝溪寨)에 호송하여 잡아가두도록 한다.<sup>36)</sup>

(B-4) 양천팔이 (빼앗은 것은) 3필 정도이므로 척장 12대 후 方環을 문신 새기고, 요주에 편관한다.<sup>37)</sup>

이 판어들을 『송사』형법지의 법률규정과 비교해 보자. 먼저, (B-1)은 죄인들이 모두 장형에 처해졌으므로 圓環을 刺字하는 것에 해당한다. (B-2)은 척장과 함께 方環이 刺字되는데, 方環은 도형이나 유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함께 부과받은 척장은 도형의 절장법적 환산<sup>38)</sup>이므로 방환의 刺字는 법률규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B-3)은 옷을 훔친 혐의에 따라 도죄에 해당되므로 刺環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조맹온의 딸과의 사통은 처벌받지 않은

34) 『清明集』 卷2 官吏門, 借補, 「郡吏借補權監稅受贓」, “譚拱, 朱八, 唐興宗, 郭通皆平日從其所嗾者, 亦皆有贓, 各杖一百, 耳後刺圓環”  
 35) 『清明集』 卷11 人品門, 士人, 「士人以詭囑受財」, “余子能合決昏, 刺方環”  
 36) 『清明集』 卷12 懲惡門, 姦穢, 「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今盜心猶故, 因在宗室趙孟溫宅僕役, 欺主公之困弱, 誘其女而姦穢之. … 且免刺環, 勘杖一百, 牒押下芝溪寨拘鎖”  
 37) 『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豪橫」, “楊千八驅乞, 紐絹三疋有零, 決脊杖十二, 刺方環, 編管饒州”  
 38) 8年法에 따른 折杖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川村康, 앞의 논문(각주 2) 참조).

구분	徒					杖				笞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척장	20	17	15	13	12	.	.	.	.	.	.	.	.	.	.
둔장	.	.	.	.	.	20	17	15	13	12	.	.	.	.	.
소장	.	.	.	.	.	.	.	.	.	.	10	8	7	6	5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蔭이 있었기에 刺環도 면제받았다. (B-4)의 경우 折杖法에 의거한 척장 12대는 도형1년에 해당하므로 도형에 해당하는 刺字인 方環이 부과된 것이다. 이를 통해 남송의 판어 속에 나타난 刺字는 북송의 신종 원풍 8년의 규정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송의 刺配에서 刺字는 유배지의 이름을 보통 刺字했지만, 남송이 되면 약간 달라져 복잡하게 되었다. 고종(高宗) 紹興 19년(1149)에 남송이 되어 도적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입목의 문자는 [配某州/府屯駐軍重役]으로 하는 것으로 달라졌다.<sup>39)</sup> 즉, 지주도통제(池州都統制)의 중역에 刺配된 者라면 [池州都統制重役]이라는 문자가 刺字되는 것이다.

효종(孝宗) 淳熙 8년(1181)에 강도죄를 범해 사형을 감형 받은 자는 이마 위에 ‘強盜’ 라는 두 글자를 새기도록 하고 다른 글자는 얼굴 양쪽에 나누어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sup>40)</sup> 또한 刺字한 글자는 [配某軍重役] 혹은 [配某州重役]의 글자를 刺字했다. 영종(寧宗) 시기에 만들어진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 「斷獄令」에는 죄인의 정황의 경중에 근거한 刺字의 크기에 관해 진실보한 규정이 나타난다.

무릇 군대를 移配하여 名額이 다르거나, 降配된 자는 글자의 크기가 2分을 넘지 못한다. 도망가거나 본성의 군대에 배류된 자는 4分, 뇌성에 있는 자는 5分, 멀고 험한 지역이나 사문도로 배류된 자는 7分이다. 옛날에 새긴 글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애버린 자는 관사에서 이를 보충하여 添刺하게 하고 불가능한 자는 別刺한다.<sup>41)</sup>

39) 『宋會要輯稿』 刑法4 配隸, “(紹興)一九年八月二十二日刑部看詳捕獲沿海劫盜並保持杖兇惡徒衆理宜措置關防令欲將合該刺配廣南及三千里之人斷訖權行刺配鄂州都統制軍下二千三百里以下之人斷訖量地遠近權行刺配池州鄂州建康府都統制軍下並收管重役使喚其刺字欲以配州府屯駐軍重役字爲文候盜賊衰息日依舊法從之”

40) 『宋會要輯稿』 刑法4 配隸, “(淳熙)八年五月十六日詔, 自今強盜抵死, 特貸命之人, 並爲額上刺強盜二字, 餘字分刺兩臉, 若額上曾經刺字者, 卽元係貸命之人, 不須更行追會以浙西提刑司言, 強盜內有逃軍, 已經貸命斷配之人, 避免再犯重刑到官不寔通元犯及元配去處追會有至數四, 終不得寔, 故有是命”

41) 『慶元條法事類』 卷75 刑獄門 斷獄令, “諸軍移配, 而名額不同, 或降配者, 所刺字不得過二分(仍不刺配字), 逃亡及配本城四分, 半城五分, 遠惡及沙門島七分, 卽舊字不明, 及出除遮改者, 官司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刺字의 크기

죄의 경중에 따른配的 유형	규 정
移配 및 降配 때 刺字할 필요가 있는 경우	刺字가 얼굴의 2分을 넘지 않게 함
도망 및 배본성의 경우	刺字가 얼굴의 4分을 넘지 않게 함
뇌성의 경우	刺字가 얼굴의 5分을 넘지 않게 함
원악주군 및 사문도로 배군된 경우	刺字가 얼굴의 7分을 넘지 않게 함
강도 및 貨命받아 배군된 경우	이마 위에 '強盜'라는 글자를 천자

이를 통해 刺字할 글자는 2-4-5-7分의 4등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어집에서는 刺字의 크기에 관한 언급은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판어에 刺字의 크기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유로는 당연히 규정에 합치하도록 刺字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었거나, 반대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해진 글자를 다시 새기는 添刺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난다.

무겁게 처벌하면 州로 보내 徒配해야 하고, 가볍게 처벌하면 다시 귀 뒤를 環形으로 찌르고 구금해서 鎖를 채워야 한다. 그러나 아손이 늙어서 옆에서 돌봐줄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므로, 만일 법률대로 시행한다면 반드시 굶을 것이고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므로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천삼은 원래 절도를 범해 귀 뒤에 환형으로 刺한 적도 있어, 일단 장형100대로 하고, 원래의 環 위에 다시 刺하기로 하고, 구금해서 쇠를 채우는 것은 면제해 준다. 동시에 모든 관계자는 석방하고 아직 출두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추금을 중지한다.<sup>42)</sup>

驗認添刺, 不可添者別刺”

42) 『清明集』 卷13 懲惡門, 妄訴, 「妄論人據母奪妹事」, “重則當解州徒斷, 輕亦合刺環抱鎖. 念阿孫年老, 止有一子侍養, 若盡法施行, 則阿孫必至饑餓失所, 只得從輕. 照得朱千三原係犯盜刺環人, 且與勘杖一百, 填刺舊環, 免抱鎖, 併一行人並放, 未到人住追”

추천삼은 절도로 인해 과거에 귀 뒤를 刺環했고 지금도 죄를 범해 원래 있던 環 위에 다시 刺環하게 되었다. 법률규정에 나오듯이 刺字한지 오래되어 불분명해진 글자를 다시 새기는 예가 아니라 새로운 죄로 인해 다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원래의 刺字 위에 다시 刺字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송대 刺字의 방법은 먼저 피부 위에 글자를 쓰거나 도안을 그린 다음, 다시 침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 새긴다. 마지막으로 자주나 흑색의 식물 액즙을 칠하게 되면, 피부 조직 밑에 침착해서 장기간 없어지지 않았다.<sup>43)</sup> 따라서 刺字를 받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비천하게 보이기 때문에 刺字는 죄인의 신체와 존엄을 모두 파괴하는 치욕으로 여겨졌다.<sup>44)</sup>

송조의 통치자들이 刺字를 시행한 목적은 “치욕을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죄인들은 “비록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 해도 얼굴상의 문자는 이미 그럴 수 없게 한다”라고 하였다.<sup>45)</sup> 이러한 刺字를 가하는 목적으로 Mcknight는 죄인에게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은 사람의 범죄심리를 억제시키며 영구적인 낙인을 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사회에 계속 알림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사회방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6)</sup> 이는 죄인에게 육체적 징벌 이외에도 신체적 특징을 남겨 선량한 백성들과 차별하기 위한 낙인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Ⅲ. 刺字에 대한 관관의 인식과 처벌대상

오대시기에 군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실시되었던 입묵의 영향

43) 周瑞熙, 앞의 글(각주 17), 102면.

44) 魏峰, 앞의 글(각주 17), 48면.

45) 郭東旭, 앞의 책(각주 15), 246면.

46) Brian E. Mcknight, op.cit(각주 33), p.349.

으로 송대에는 형벌로서의 刺字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사형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刺配의 일부분을 구성했던 刺字는 진종과 신종대를 거치면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남송대에 이르러 刺字의 대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만들어졌고, 판어를 통해 그 규정이 어느 정도로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도 II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청명집』 판어를 통해 刺字에 관한 판관의 인식과 刺字에 처해지는 구체적 범죄 내용, 신분이나 직업의 경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명집』에 刺字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판어는 대략 40여 건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권(卷)1 관리문에서 2건, 권2 관리문에서 3건, 권3 부역문에서 2건, 권9 호훈문에서 1건, 권10 인륜문에서 1건, 권11 인품문에서 17건, 권12 징악문에서 11건, 권13 징악문에서 2건이다. 刺字는 민사소송을 다룬 호훈문에서는 거의 부과되지 않고 형사적 사건이 주로 나타나는 인품문이나 징악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刺字의 형벌적 지위를 드러낸다 하겠다. 즉, 송대 刺字는 무거운 죄를 범했을 때 가해지는 강력한 형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청명집』을 쓴 판관으로 대표되는 송대 사대부는 刺字의 실행과 판결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판어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은 형호남로의 안무사였던 진서산(眞西山)이 동료 및 諸知縣에게 백성에게 해가 되는 열가지라는 ‘十害’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일부와 절서전운사인 오우암(吳雨巖)의 글이다.

잔혹한 형을 사용하는 것-형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라. 타인의 육체도 자신의 육체같이 하라. 잔학한 것을 가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관리 중에는 즐기며 자기 기분대로 형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심한 자는 부당한 관계에 의해 형을 사용한다. 실로 형이 나라의 제도이고 하늘을 대신해 죄를 다스리는 것을 생각지 않은 처사이다. 관리된 자는 노여움을 가지고 사정을 행해서는 안된다. 경계해야 한다.<sup>47)</sup>

47) 『清明集』 卷1 官吏門, 申徹, 「咨目呈兩通判及職曹官」, “慘酷用刑, 刑者, 不獲已而用, 人之體膚, 卽己之體膚也, 何忍以慘酷加之乎! 今爲吏者, 好以喜怒用刑, 甚者或以關節用刑, 殊不思刑者, 國之典, 以代天糾罪, 豈官吏逞忿行私者乎! 不可不戒”

여자는 척장으로 정하고 방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옛 사람이 ‘나쁜 습관은 일단 형성되어 버리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고, 또 성급히 중형을 내리면 ‘不敎의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여자를 교도하는 것에서 그치기로 하겠다. 여자는 은 죽비 20대로 정하는 것으로 대장을 대신하고 500리 편관하기로 한다.<sup>48)</sup>

진서산은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잔혹한 형을 가해 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오우암도 方環을 刺字해야 하나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판관들도 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형벌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일종의 肉刑이라 할 수 있는 刺字를 형벌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관들은 잡초를 방치하면 결국 곡물의 해가 되고 들개와 이리를 잡지 않으면 결국 마을로 내려와 해를 입히는 것과 같이 악인들은 선량한 백성을 위해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49)</sup>라고 보았다. 판관은 鎭중의 백성이 하루라도 안심하며 살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sup>50)</sup> 또한 분실한 물건이 되돌아오고 밤중에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안심할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sup>51)</sup> 보았기에 죄질이 무거운 중죄인에 한해 일반인의 본보기로서 刺字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제가 된 縣吏의 처벌은 각 현에 첩문을 보내어 고소당한 사람 중에서 가장 지독한 자를 골라서 백성과 都保의 돈과 회자를 몰수했으면서도 관에 납부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한 두 명은 刺字에 처한다. 이렇게 하여 백성에게 사죄하게 하고, 많은 금액을 횡령한 자는 본주로 解赴하고 시행하라.<sup>52)</sup>

48) 『清明集』 卷11 人品門, 士人, 「士人以詭譎受財」, “余子能合決脊, 刺方環。但古人於惡習已成之後, 謂其未易洗滌, 遂用重刑, 近於不敎之虐, 所以姑惟敎之。余子能決竹篋二十, 以代大杖, 仍編管五百里”

49) 『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爲惡貫盈」, “稂秀不除, 終害嘉穀, 豺狼不去, 終禍鄉井”

50) 『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詐官作威迫人於死」, “一鎭之民, 終無寧居之日矣”

51) 『清明集』 卷12 懲惡門, 姦穢, 「兵士失妻推司受財不盡情根捉」, “道不拾遺, 戶不夜閉, 郡治之先事也”

유후촌(劉後村)이 쓴 글을 보면, 刺字는 죄를 범한 죄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몇몇에게만 부과되었다. 그는 刺字를 모든 죄인에게 부과하기에는 형벌의 낙인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중 가장 지독한 몇몇에게만 刺字를 행하여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본보기로 삼았다. 동시에 일반민들에게는 비록 몇몇의 죄인이긴 하지만 刺字를 부과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형벌로서의 刺字는 사형을 제외한 형벌 중에서 형벌의 위협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벌이었으며 따라서 刺字는 膺懲의이고 威嚇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판어를 보자.

황덕은 최장 후 刺環죄를 범한 州吏이다. 그런데 주의 백성의 원성을 들을만한 일을 감히 한 것이다. 황덕의 刺配 날, 길가의 백성들은 모두 이마에 손을 대고 하늘을 향한 쾌재를 불렀던 것이다. 삼척동자조차 벽돌기왓을 던져 이를 갈고 침을 뱉어 욕을 하는 모습. 백성은 그만큼 괴로웠던 것이다. 굳이 본사가 그놈에게 黥을 하지 않아도 도대판부직원이 반드시 黥을 했을 것이다.<sup>53)</sup>

이미 자환을 당한 州吏 황덕이 백성을 괴롭혀 다시 刺配되자 죄중이 무겁기 때문에 판관이 刺字를 하지 않더라도 도대판부에서 刺字를 했을 것이라고 하며 刺字의 당위성에 대해 덧붙이고 있다. 고통받는 백성에게 그들을 괴롭히던 존재를 잡아 刺字하는 것은 판관의 정의로움을 보여주고 민심을 수습하는 명쾌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치에 어긋나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데도 이 자를 문신형에 처하지

52) 『清明集』 卷3 賦役門, 催科, 「州縣不當勒納預借稅色」, “所論縣吏取乞, 且帖各縣. 於被論人內擇其尤甚, 謂如乾沒百姓, 都保錢, 會, 不以輸官者, 斷刺一二, 以謝百姓, 其賊多者解赴本州施行. 仍榜縣市.

53)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罪惡貫盈」, “黃德以一決脊刺環罪犯州吏, 而能使千里之民敢怒而不敢言, 黥配之日, 闔城民庶無不以手加額, 呼天稱快, 雖三尺童稚, 亦拋擲瓦, 切齒唾罵, 百姓不堪其若如此, 縱本司不黥之, 都大直院亦必黥之矣!”



않는다면, 어찌 본사의 서리를 응징할 수 있겠는가. 이놈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어찌 한 路의 백성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sup>54)</sup>

그 죄를 조사해 보면 주살해도 부족함이 없고, 얼굴에 경을 해도 그 나쁜 일을 징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이런 자는 추방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편안해 질 수가 없다.<sup>55)</sup>

위의 판어 역시 경형을 통해 죄인을 단죄하고 다른 서리와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黥은 誅殺과 함께 쓰여질 정도로 嚴刑이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판어들을 통해 볼때 판관은 刺字라는 형벌이 여타의 다른 형벌에 비해 상징적이고 위협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지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판관들은 刺字에 대해 신중을 기하며 가능한 자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刺字를 형벌로써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떤 범죄와 죄인들이 刺字형에 처해지는 것일까?

문헌상에 刺字가 부과되는 범죄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刺配에 해당하는 범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가베 시즈오는 刺配의 형을 받는 자의 대부분은 절도, 강도의 죄를 범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그 외로 전매품을 밀조밀매한 경우, 銅禁·酒禁을 범한 자, 살인죄를 범한 자라도 사형이 특별히 감해진 경우 刺配에 처해졌다. 도박 및 잡범에 대해서 刺配가 부과되었고 『송사』 형법지에 의하면, 원우 6년의 刑部의 상언에는 위의 모든 범죄 외에 放火, 十惡, 造蟲 등도 해당하는 듯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본래 사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이 한 단계 낮아져 刺配를 받게 되고 결국 刺字가 행해졌던 것이다.<sup>56)</sup>

『문헌통고』에 따르면 刺配刑의 범위는 날로 확대되어 진종대는 刺配의 조

54)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籍配, “逆理亂倫有如此者, 不黥之, 何以懲本司之吏, 不籍之何以謝一路之民?”

55) 『清明集』 卷13 懲惡門, 誹徒, 「撰造公事, “推原其罪, 不可勝誅. 不黥其面, 無以懲惡, 不竄其人, 無以安衆”

56) 曾我部靜雄, 앞의 책(각주 16), 106~107면.

항이 46조항, 인종 친성대에는 54조항으로 늘어났고 인종 경력 년간에는 99조항으로 늘어났으며 남송의 효종 순희 14년에는 570조항이나 되었다고<sup>57)</sup> 하여 상당히 많은 범죄가 刺配에 처해짐을 알 수 있다. 물론 刺字를 한 후 배류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刺字를 받지 않고 배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급된 570조항 모두 刺字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조항이 刺字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헌통고』에는 570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어를 통해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청명집』에 刺字를 받은 범죄의 내용은 대체로 납세독촉, 뇌물수수, 자의적 징세, 관직 사칭으로 인한 백성 수탈, 소송을 이용한 협박, 첩이나 처 또는 관기를奸함, 옥에서 도주, 직무유기, 횡령, 우발적 살인, 재산 절도, 백성을 신체적·물리적으로 괴롭힘(폭행, 고문, 협박)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우발적 살인이나 강도·절도는 북송 초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감등하여 刺字에 처한 규정이 계속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납세독촉이나 자의적 징세, 뇌물수수, 횡령,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는 일반 민들이 자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는 일반 민을 지배하는 관인이나 그 밑에서 행정실무를 관할하는 서리의 경우어나 가능한 것이다. 관인으로 추정되는 관련 판어를 먼저 살펴보겠다.

(C-1) 정응진은 蔭이 있다고 하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에 刺環은 면제하고 감장100대에 처하여, 문서를 보내 지계체에 호송하여 잡아가두도록 한다.<sup>58)</sup>

(C-2) 본래 책장으로 정한 뒤 刺配하여 이런 화도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지만, 본인의 공술에 의하면, 부친이 무관이므로 우선은 그 蔭에 의해 형벌을 경감해서, 감장형100대

57) 『文獻通考』 卷166 刑考5, “南渡後諸配隸, 祥符編勅止四十六條, 慶曆中增至百七十餘條, 至於淳熙又增五百七十條, 則四倍於慶曆矣”

58) 『清明集』 卷12 懲惡門, 姦穢 「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鄭應臻自稱有蔭, 未委虛實, 且免刺環, 勘杖一百, 牒押下芝溪寨拘鎖”

후 구주(강동동로)로 편관한다.<sup>59)</sup>

(C-1)은 음(蔭)의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대부 관인으로 간주하여 자환을 면제하고 있고 (C-2)도 부친의 음에 따라 刺配를 감장과 편관으로 감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인이 刺字되는 판어는 『청명집』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북송 초기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棄市刑에 처하거나 杖殺하거나 刺字한 후 사문도에 배류하는 등 엄격히 다스렸다고 하나 이후, 중앙 집권의 강화를 위해 관리들의 지지가 필요하자 관대해졌다.<sup>60)</sup> 남송대가 되면 더욱 관대해져 『경원조법사류』는 『송형통(宋刑統)』보다 한층 더 처벌이 가벼워졌다<sup>61)</sup>는 글을 참고하면 刺字에 처해진 자들은 사대부 관인이 아닌 것이 확실하겠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범죄 등의 이유로 刺字를 당한 대부분의 경우는 관인을 도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刺字가 나오는 판어를 살펴보면 刺字에 처해진 죄인의 신분적 경향성이 비교적 뚜렷이 확인된다. 刺字에 처해진 죄인은 서리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胥吏, 통판청의 案吏, 傳人, 전직 吏, 配吏, 攬戶, 縣吏, 州吏, 傳押, 鄉書手, 推吏, 都吏 등의 다양한 서리들이 28건 정도의 판어에 등장하였다.

(D-1) 건양현(북건로 건녕부)은 일찍이 ‘壯邑’이라 불렸는데, 이 10년 동안 縣政은 옳음을 잃어, 서리는 경배형을 받아 거의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오합지졸로 나쁜 짓거리만 하는 무리들이다.<sup>62)</sup>

(D-2) 집에서는 악당 금구일 31명 정도를 거느리며 부하로 삼고, 주 관청에서는 黥吏인

59) 『清明集』 卷12 懲惡門, 姦穢 「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合該決脊刺配, 以爲譴徒之戒, 以其所供, 父係武弁, 姑從引蔭未減, 勘杖一百, 編管衢州”

60) 張晉藩, 앞의 책, 342~343면.

61) 張晉藩, 위의 책, 343면.

62)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黥吏爲公私之蠹者合行徒配以警其餘, “建陽舊號壯邑, 十餘年間, 縣道弗良於政, 公吏黥配殆盡, 今所存者, 但是烏合不根, 鼠竊狗盜輩”

俞鑑 등과 결탁해서 관청에 대한 공작에 이용했다.<sup>63)</sup>

건양현에서는 대부분의 서리가 경배형을 받아 없어질 정도로 서리의 범죄가 많았고 그로 인해 처벌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D-2)에 나타난 黥吏는 黥刑, 즉 刺字를 받은 서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黥吏라고 불리는 刺字당한 서리가 많이 존재하였던 것일까. 刺字는 왜 서리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부과되었을까. 이는 서리의 낮은 녹봉에<sup>64)</sup>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리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많은 범죄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남송은 북송에 비해 서리의 정원을 줄인 반면, 여러 주에서는 대부분 정원 외의 人吏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정원 외 인리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sup>65)</sup> 조복현은 관리나 서리의 봉록을 올려도 부정행위는 감소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낮은 봉록보다 각종 이권과 연관된 서리의 권한여부와 도덕적 소양이 부정행위에 있어 더 결정적이라고 보았다.<sup>66)</sup> 그 주장을 참고하면, 서리의 이권과 관련된 권한과 직권남용의 가능성, 그리고 서리의 청렴 결백하지 못한 소양이 송조로 하여금 서리의 범죄를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성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리에 대한 一罰百戒의 상징으로서 刺字가 행해졌던 것이다.

63) 『清明集』卷13 懲惡門, 告誡, 「資給人誣告, “居家則蓄養惡少金九一等三十來輩, 以供爪牙之役, 在州則結交黥吏俞鑑等, 以通腹心之謀”

64) 초기에 서리는 민의 役에서 시작되어 변형된 것이었으므로 무봉록이 원칙이었으나 신종 희녕3년(1070)에 창리들이 봉록이 없어 경제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창법을 제정해 吏인에게도 봉록을 지급하고 부정을 범하면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하지만 조복현은 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吏人の 봉록을 후하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며, 부정한 행위는 뇌물을 받을 정도의 일정한 권한을 소유한 사람의 소양 문제이지 봉록이 적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였다. 조복현, 『宋代 官僚社會에서 賂物授受가 盛行한 背景과 土風』, 『東洋史學研究』95(東洋史學會, 2006), 88~91면.

65) 申泰光, 「南宋後期の 胥吏」, 『지촌김갑주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1994), 1199면.

66) 조복현, 앞의 글(각주 64), 90~91면.

한편, ‘吏强官弱’, ‘吏能制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판관 및 관료의 위기의 식도 刺字리는 중형을 서리에게 부과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sup>67)</sup> 양송교체기의 서리통제는 金齊聯合軍의 침입으로 增稅가 불가피해지자 서리의 역할이 증대 되었으며, 특히 秦檜는 지방재정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서리를 활용하였으므로 서리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었고, 對金和平路線으로 남북의 균형공존 상태가 확립되자 더욱 심화되었다.<sup>68)</sup> 효종대 대폭적인 인원감축과 관료의 행정 장악에 따른 서리 멸시풍조에도 불구하고 서리는 계층적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폐쇄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남송후기까지 입지를 고착시켰다.<sup>69)</sup> 그래서 吏는 강하고 官은 약하며, 吏가 官을 제압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실제로 판관은 향촌사회에서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인지하였다.

지방관, 즉 판관의 고투의 기록인 『청명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방관의 행정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역설적이게도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필요불가결한 서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70)</sup> 그러므로 중앙관료들은 서리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형벌을 만들었고 서리계층에 대한 멸시풍조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판관의 법적용 역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촌에서 그러한 현상을 인지했던 판관은 서리를 견제하며 刺字에 처하고 향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배류하였던 것이다.

刺字에 처해진 자들의 신분 혹은 직업적 경향성을 분석해 볼 때, 서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음으로 다수 나타나는 자들은 謹徒 또는 豪橫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sup>71)</sup> 그들은 주로 지역의 실력자로서 재판과 관련된 분쟁에 많이 개입하였다. 소송에 개입하는 화도들은 대체로 形勢之家나 士人, 서리 등인데,

67) 한편 『清明集』에는 “饒州等州, 官弱民强, 所謂强者, 非謂一切齊民, 蓋謂一等豪民也”라고 하여 관은 약하고 호민은 강함을 지적하는 판어도 제시된다(『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豪民越經臺部控扼監司」).

68) 申泰光, 「南宋前期의 胥吏」, 『東國史學』 27(東國大學校出版社, 1993), 95~96면, 103~108면.

69) 신태광, 앞의 글(각주 65), 116~122면.

70) 박영철, 「訟師의 출현을 통해 본 宋代 중국의 법과 사회」, 『法史學研究』 27(韓國法史學會, 2003), 272면.

71) 『清明集』에서 刺字당한 화도가 나오는 판어는 8건 정도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가장 다수를 접하는 것이 서리였다.<sup>72)</sup> 결국 판어에서 화도로 나오는 자들도 대부분 서리 출신이라는 것이고, 刺字에 처해지는 직업적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요컨대, 『청명집』에서의 刺字는 형벌의 위협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벌이었으며 따라서 판관들은 刺字를 응징적이고 위하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刺字에 처해지는 범죄는 송초에 살인, 절도, 강도와 같은 것이었으나 남송대가 되면 조항이 확대되어 납세독촉이나 자의적 징세, 뇌물수수, 횡령,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청명집』 판어에서 刺字에 처해진 자들의 신분 혹은 직업적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절대다수를 차지한 직업이 서리로 나타났다. 刺字에 처해진 서리는 경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낮은 봉록에 의한 구조적 모순과 비도덕적인 소양으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판관은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차원에서 刺字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 IV. 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앞 장에서 남송대 형벌로 부과된 刺字의 실제 적용사례와 판관의 인식, 그리고 刺字를 받은 죄인의 모습을 통해 남송대 刺字에 대한 향촌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청명집』을 통해 살펴보았다. 판관으로 대표되는 남송의 지배층은 위협적이고 위하적인 성격을 가진 刺字를 죄인에게 집행함으로써 죄를 범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를 예방하려 하는 동시에, 흔히 小民이라 불리는 일반민들에게는 국가의 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 민심을 수습하는 상징적인 형벌로 활용하였다. 남송대에는 刺字에 처해지는 범죄의 종류도 대폭 늘어났고, 그러한 刺字를 가장 많이 받는 죄인은 서리였음을 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72) 박영철, 앞의 글, 260~261면.

그렇다면, 남송정부는 刺字를 받은 죄인들을 국가권력에 의해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였을까. 남송의 일반민들은 刺字를 어떻게 인식하고, 刺字를 당한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관관이 의도한 것과 같은 위협적인 형벌의 효과로 인해 일반민으로부터 매장되었을까. 얼굴이나 귀, 이마 등에 刺字를 받은 죄인은 형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자.

刺字한 다음 배류되는 刺配刑에 처해진 죄인들은 일반적으로 배류된 본성이나 뇌성부대의 일원이 되어 군역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송군대의 주력인 屯駐大軍 역시 범죄로 인해 刺字되고 유배당한 죄인을 병사로 이용했다.<sup>73)</sup> 둔주대군은 뇌성의 병졸에게도 대우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들이 도망가서 다시 도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sup>74)</sup>

하지만 남송대는 대체로 일년에 한번 이상 恩赦가 시행되어<sup>75)</sup> 형벌이 감형되었으므로 전과자로서 귀환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刺字한 후에 배류되지 않는 형벌에 처해지거나 배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경우, 『청명집』의 판어를 보면 刺字를 받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예전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지위를 유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蔣元廣은 동양현의 벽촌에 살고 있는 이런 악당 중 한 명이었었는데, 나쁜 짓을 통해 순식간에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다. 그곳 일대의 유력자인척 하며 기세 당당하게 하지 않는 짓이 없었다. 집에서는 악당 금구일 등 31명 정도를 거느리며 부화로 삼고, 주 관청에서는 黥吏인 俞鑑 등과 결탁해서 관청에 대한 공작에 이용했다. 하급기관의 현리들은 그 권력이 두려워 말하기는커녕, 일대의 선량한 백성조차도 숨을 죽이고 누구도 감히 상대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許鏞는 가난한 선비였는데, 노비 중 郭秋香이라는 자가 있어 못에서 빨래를 하던 중 발을 헛디더 익사해 버렸다. 그 아버지 郭太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73)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姦賊」, “決脊杖十五, 刺配二千里州軍牢城”

74) 魏峰, 앞의 글, 48면.

75) Mcknight는 북송 166년 동안 100여 건 이상의 사면이 있었고 남송대에는 ‘錄囚’ 라는 형태의 사면이 1163년 이후, 매년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Brian E. Mcknight, *The Quality of Mercy*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126.

동시에 시신도 확실히 확인했으므로 그 때에는 이렇다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미 장례도 끝난 시점에서 장원황이 나쁘게도 흑막이 되어 許義에게 자금을 원조해, 당치도 않은 소송을 일으키고, 허용이 꺾추항을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무고시킨 것이다. … 장원황은 나쁜 일을 거듭했고 죄상도 밝혀져서 그 소행은 하늘과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척장 17대로 결정해서 얼굴에는 문신을 하고, 500리의 신주(강남동로) 동성으로 유배시켜라. 허의·허무·장오 등은 눈 앞의 금품에 눈이 어두워 주저없이 법률을 범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同惡相濟”의 무리이다. 허의는 척장 17대로 결정해서 500리의 건녕부(복건로)로 편관하고, 허무와 장오는 각각 척장15대로 결정해서 外寨에 구속한다. 유감은 문신 형을 받은 주의 서리인데, 배소에서 도망쳐 와서 나쁜짓만 하고 있다. 척장 12대로 결정하고 문신을 다시 해서 원래 배소로 돌려보내고 영원히 석방·귀환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이상에 대해 고찰을 세워 널리 알리고 앞머리에 적은 듯한 愚俗을 훈계하기로 한다.<sup>76)</sup>

위의 판어를 보면 동양현의 유력자인 장원황은 그의 무리들과 다른사람의 소송분쟁에 개입해 그들만 이익을 얻을 뿐 정작 소송당사자인 백성을 괴롭혀 온 인물이다. 장원황 무리는 주 관청의 경리인 유감 등과 암암리에 연계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때 허용이라는 선비가 소송을 교사하는 장원황 무리에 의해 피해를 받아 죽음에 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처벌받는다라는 판어이다. 여기서 유감이라는 인물은 예전에 이미 경형을 받은 郡吏[黥吏]로, 배소에서 도망쳐 나와 예전과 다름없는 지위를 이

76) 『清明集』 卷13 懲惡門, 告訐, 「資給人誣告」, “蔣元廣, 東陽田間一屠噬之毒, 過爲不道, 驟致富強, 稱雄一方, 披猖萬狀. 居家則蓄養惡少金九一—等三十來輩, 以供爪牙之役, 在州則結交黥吏俞鑑等, 以通腹心之謀, 縣吏望風懼之, 罔不惟命. 一方善良, 吞聲飲氣, 誰敢與之抗衡. 許鏞, 貧士也. 有婢郭秋香, 因澣衣於池, 失足不救, 其父郭太在旁觀看, 自見屍首, 初無他故. 既殮而葬之, 蔣元廣平白資使許義, 鑿空興詞, 誣訴許鏞, 寃之致死. 趙知縣察見非辜, 坐以誣告之罪, … 蔣元廣積惡有餘, 罪狀顯著, 天刑國憲, 舉不容逃, 決脊杖十七, 仍刺面, 配五百里信州東城. 許義, 許茂, 蔣五, 利一時之資給, 輕冒刑章, 此同惡相濟之人也. 許義決脊杖十七, 編管五百里建寧府. 許茂, 蔣五各決脊杖十五, 抱鎖外寨. 俞鑑, 已黥之郡吏也, 寅緣逃歸, 專易安也, 決脊杖十二, 填刺押回原配所, 永不放還. 仍備榜行下, 以儆愚俗”



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경형을 받은, 즉 刺字를 당한 경리라면 그 지역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일반민에 비해 훨씬 낮은 지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오히려 구애됨이 없이 사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유감과 같은 인물은 송대 刺字를 당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일까. 아래의 판어들도 살펴보자.

(E-1) 黥配가 된 서리를 추방해서 양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지방관의 仁政으로 봐야하고, 본사는 이런 지방관의 모든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고 있다. 죄를 범해서 파면된 서리의 경우는 그 범한 죄가 아주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방축할 수 있어, 지방관이 악을 미워하는 기분이 상당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첩문으로 통지하고 다시 추천해서 발탁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어, 路 내의 42현 모두에 첩문으로 통달하라.<sup>77)</sup>

(E-2) 본관이 해당 지역에 들어와 송장을 점검하니, 전과가 있는 서리를 고소한 것은 수천 명에 이른다. 이 자들이 1로의 백성의 해가 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미 그 심한 자를 골라 가배·구속하고 차례로 소환해서 취조하여 그 원인을 규명했는데, 모두 汚穢 관리가 이 무리와 마음을 합쳐 요역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서리의 반은 黥徒이고, 약탈해서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없었다. 도죄로서 배류된 이후 점점 꺼리는 일없이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고 그 모습은 표범보다 심하다. 요즘 감사가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관리는 문서를 형식상으로만 보고 겉으로는 방축하는 것으로 하나, 뒤에서는 유지시키고 있다.<sup>78)</sup>

두 판어는 강남동로의 제형사인 채구헌이 쓴 것이다. (E-1)의 판어는 黥配가

77) 『清明集』卷11 人品門, 公吏, 「逐出過犯人吏檢舉陞陟」, “逐黥配之吏, 以安良民, 此可見令尹之仁政, 本司併行籍記, 所有打罪勒罷之人, 所犯雖少輕, 然能併逐之, 尤見嫉惡之盛心. 帖報, 仍具檢舉陞陟, 併帖四十二縣”

78) 『清明集』卷11 人品門, 公吏, 「冒役」, “當職入境閱詞, 訴配吏者以千計, 則一路之爲民害者可知也. 雖已揀其尤者加配拘鎖, 及以次追究, 推原其由, 皆貪官暴吏與之志同氣合, 容縱冒役, 所以行案貼寫, 半是黥徒, 攫拿吞噬, 本無厭足. 既經徒配, 愈無顧藉, 吮民膏血, 甚於豺虎. 前後監司非不嚴禁, 往往官吏視爲具文, 名曰罷逐, 暗行存留”

된 서리를 추방한 지방관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천해서 승진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지방관이黜配된 서리를 방축하는 것이 승진으로 연결될 만큼 소신있고 용기있는 행동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배된 서리의 대부분이 추방되지 않았던 남송대 지방사회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요컨대 죄를 범해 경배에 처해지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았던 송대 서리의 모습을 반증한다. 한편, (E-2)의 판어를 보면 요역을 어지럽히는 사건을 조사한 서리의 절반이 이미 刺字를 당한黜徒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도죄로 배류된 이후 더욱 거리낌없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였다.

남송대 刺字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였고 이들 서리는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刺字를 받은 서리인黜吏들이 향촌에서 다시 재임용되는 사례가『청명집』에서 다수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경리가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을 통해 남송대 刺字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송대는 법적 처벌을 받아 파면되면 다시 재임용될 수 없었다. 특히 뇌물죄로 도형 이상의 형을 받아 파면된 서리는 더욱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법을 세워 이를 경계하는 조서를 자주 반포하였다.<sup>79)</sup> 다음은 관련 판어이다.

이준명은 원래 주의 리였는데, 이미 파면되어 도형을 받았으므로 吏役に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창사에 제멋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불법인데 차보에 의해 승신랑이 되었다고 사기를 쳐서 폭가파에서 감세의 직역을 총괄하게 되었다.<sup>80)</sup>

위에서는 주리가 파면되어 도형을 받으면 다시 서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黜吏가 다시 재임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黜吏가 재임용된 배경은 우선 남송의 지방행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79) 郭東旭, 앞의 책(각주 15), 127면.

80) 『清明集』卷2 官吏門, 借補, 「郡吏借補權監稅受贓」, “李俊明原係郡吏, 已經徒勒, 豈應入役, 輒就倉臺, 妄行叙復. 已爲不法, 又敢恃借補爲承信, 攝監稅於暴家峽”

보인다. 다음의 판어를 살펴보자.

(F-1) 다시 상사의 재판을 받고, 또 본관은 많은 사람들의 의논을 듣고 지현의 의견을 구했다. 그들은 모두 ‘본현의 망해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손회의 지휘하에 있으므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처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관은 본현의 월해의 망해가 닥쳐오는 사정을 감지하고 그 요청에 따르기로 한다. 손회는 이전 판결대로 척장 20대로 정하고 해주로 배류하라. 현옥에 수감하고 구금장을 발부하며 본현의 망해가 끝나는 날을 기다려 다시 법에 비취 문신하라.<sup>81)</sup>

(F-2) 그 외에 부패한 서리가 많이 있지만 본관은 縣政에 실무요원이 모자라게 될 사태가 염려되어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명해서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란다. 만일 다시 소송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추배로 결정하겠다.<sup>82)</sup>

(F-1)은 손회라는 서리가 척장 20대를 부과받고 刺字한 후에 해주로 배류되는 판결을 받았으나 ‘본현의 綱解’라는 일을 앞두고 있고, 이를 손회가 총괄지휘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때까지 처벌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지현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요청했기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후자도 부패한 서리가 많은 것을 판단도 알고 있지만 그들을 죄에 따라 모두 처벌하면, 현의 실무행정에 차질이 초래되기 때문에 유난히 심한 한두명만을 본보기 삼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판관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단죄하는 것만큼 향촌의 실무행정을 순조롭게 유지시킬 임무도 있었기에 현실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남송의 지방행정에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

81)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違法害民」, “再奉臺判, 當職再得之衆論及知縣之言, 皆謂本縣綱解首尾, 皆在孫迴名下, 欲得了辦畢日行遣. 當職念本縣月解窘急, 重違其請. 孫迴照已判決脊杖二十, 寄配惠州, 收禁縣獄. 上禁單, 候了本縣綱解畢日, 追上照刺”

82)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鉛山賊吏」, “其餘汚吏尙多, 當職念縣道乏使, 未欲盡行追究, 仰自改過, 如再招詞訴, 決定追配”

들은 사대부 관료와는 다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刺字된 경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방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여 재임 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원활한 지방행정을 위한 현실적 이유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刺字라는 형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Ⅲ장에서 본 것처럼 남송대에는 크고 작은 범죄를 막기 위해 죄인을 刺字하는 형벌의 조항수가 크게 늘어났다. 북송 초기에 減死1等刑으로서 刺配가 생겨났고 刺配의 한 부분으로서 구성된 것이 刺字였으므로, 刺字는 초기에 사형을 감면받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刺配에 해당하는 범죄가 남송의 효종 순희 14년(1188)에 570여 조항으로 증가하면서 刺字를 받은 죄인들도 증가하였다. ‘배법이 많고 범죄자도 많아 刺字를 당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sup>83)</sup>라는 말과 같이 남송대 사회에서는 범죄를 지어 刺字를 당한 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로서의 刺字가 가지고 있는 낙인기능을 약화시켜 일반인에 대한 경고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생각된다.

이는 刺字와 함께 부과되는 형벌의 다양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刺字는 등에 장을 가하는 척장과 배류와 함께 부과되는 형벌이었다. 『청명집』의 刺字도 刺字와 함께 척장과 배류가 함께 부과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어 ‘決脊杖十五刺配一千里’ 또는 ‘決脊杖十五刺配信州’와 같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명집』판어를 보면 다른 부가형도 등장하는데 다음을 보자.

(G-1) 방원이 빼앗은 것은 건 5필에 해당하므로 척장 12대 후 휘주로 편관시키고, 양친 팔은 3필여 이므로 척장 12대 후 方環(네모진 고리모양)을 刺字하고 요주에 편관한다. 장명과 동우는 각각 감장 100대 실시 후 건녕과 구주로 편관한다.<sup>84)</sup>

83) 『文獻通考』卷168, 「刑7」, “配法既多, 犯者自衆, 黥隸之人, 所至充斥”

84) 『清明集』卷12 懲惡門, 豪橫, 「豪橫」, “方願騙乞, 紐絹計五疋, 決脊杖十二, 編管徽州, 楊千八騙乞, 紐絹三疋有零, 決脊杖十二, 刺方環, 編管饒州. 張明, 童友各勸杖一百, 編管建寧, 衢州”

(G-2) 탕우·왕중은 각각 둔장 20대로 정하고, 얼굴에 刺字하고 1000리 떨어진 곳에 배류한다.<sup>85)</sup>

(G-3) 일단 장형100대로 하여 원래의 環 위에 다시 刺하기로 하고, 구금해서 쇠를 채우는 것은 면제한다.<sup>86)</sup>

판어에서 부과된 형벌을 정리하면 (G-1)은 편관, (G-2)는 둔장, (G-3)은 장형 100대이다. 편관은 배류와 달리 이동해 간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符籍에 기입하여 감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배류보다 훨씬 가볍고 느슨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배속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죄인을 고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양상을 보였으며 무기형이 아니라 대체로 6년이 지나면 고향으로의 귀환이 허용되었다. 쓰지 마사히로(辻正博)는 편관과 배류를 비교하면서, 편관은 不刺面配流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편관과 不刺面配流는 刺字하지 않으며 형기가 6년이기 때문이다.<sup>87)</sup> 판어에서 문제가 되는 죄인은 척장 12대와 방환을 刺字하고 요주에 편관된 양천팔이다. 도죄에 해당하는 방환을 刺字하는 것과 함께 부과되는 것은 배류여야 마땅하지만 편관이 부과된 것을 통해 重刑으로서 刺字에 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둔장은 영덩이에 杖을 가하는 것으로 도형이 아닌 장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折杖法으로 환산된 형벌이기 때문에 역시나 척장에 비해 가벼운 형벌이다. 마지막 판어도 자환과 함께 부과하는 형벌이 장형100대로, 이는 折杖法에 의하면 둔장20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벼운 형벌들과 刺字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것은 남송인들에게 刺字의 엄벌적인 인식이 변화하게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남송대가 되면 刺字는 초기에 배류와 함께 부과되어 엄벌적

85)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州吏故違安邊所錄匣」, “蕩友, 王琮各決臀杖二十, 刺面配一千里”

86) 『清明集』 卷13 懲惡門, 妄訴, 「妄論人據母奪妹事」, “且興勘杖一百, 填刺舊環, 免抱鎖”

87) 辻正博, 앞의 글(각주 26), 452면.

이고 중형적인 형벌의 성격이 편관이나 둔장과 같은 부가형이 함께 판결됨으로서 엄벌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刺字를 받는 죄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刺字의 낙인기능 역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송대 강제로 刺字를 한 사람은 죄인 뿐 만이 아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군인의 경우이다. 송대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이나 목, 손등과 같은 부위에 入墨하는 것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에 刺字를 하였던 것이다. 병사들이 군대로부터 이탈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얼굴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입묵하는 제도가 이후에 죄인에 대한 형벌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당말 오대초 汴京의 주전충(朱全忠)과 연(然)의 유인공(劉仁恭)이 爭鬪할 때이고 이것이 오대를 통해 일반적 관행으로 행해지면서 북송에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북송대는 禁軍·상군廂軍·鄉兵·蕃兵의 4개 병종 모두 입묵을 하였고 입묵의 부위와 목적에는 차이가 있었다.<sup>88)</sup> 금군과 상군은 도망 방지를 위하여 얼굴이나 손등에 입묵하고, 향병은 軍號를 나타내기 위하여 손등에 입묵하였다. 번병도 군호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른손 虎口에 ‘忠勇’이라는 자호를 입묵하였으나 나중에는 공을 탐하는 漢兵들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蕃部の 弓箭手가 한족 군대의 刺字를 얼굴이나 손에 새기거나 왼쪽 귀에 ‘蕃兵’이라고 입묵하였다.<sup>89)</sup> 특히 정강년간의 근병들은 얼굴에 ‘誓殺金賊不負趙王’이라고 입묵하여 ‘八字軍’이라 하고 외적을 물리쳐 왕조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고양시킬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sup>90)</sup> 남송 초기의 항금명장으로 유명한 악비(岳飛)의 등에 그의 모친이 ‘精忠報國’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애국심을 표시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바이다.<sup>91)</sup>

88) 安俊光, 「北宋軍의 充員制度」, 『歷史教育論集』 17(歷史教育學會, 1992), 75~76면.

89) 安俊光, 「北宋의 蕃兵에 대하여」, 『慶北史學』 15(慶北史學會, 1992), 18면; 魏峰(각주 17), 48면.

90) 曾我部靜雄, 앞의 글(각주 10), 306~312면.

91) 王曾瑜, 『岳飛和南宋前期政治軍事研究』(河南大學出版社, 2002), 425면.

남송대에도 입묵을 면제받는 군대인 效勇士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군대에서 입묵하는 풍습이 이어졌다.<sup>92)</sup> 남송에서 전투를 하는 주된 부대인 둔주대군은 손에 刺字를 하고 금군과 상군은 얼굴에 刺字를 했으며, 고급군인인 효용은 손과 얼굴에 刺字를 하지 않았다.<sup>93)</sup> 위봉(魏峰)은 모병시 손에 刺字하는 것은 남송의 군부가 안정된 이후의 규정이고 남송 초기에는 전쟁 상황이 위급하였고 모병하는 것이 다급했기 때문에 원래 얼굴에 刺字하는 규정을 따랐을 것이라고 하였다.<sup>94)</sup> 刺字를 한 이유는 다르지만 군인의 刺字와 죄인의 刺字는 그 기능이 모두 그들 집단과 평민을 구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특히 송대의 군대는 죄인을 刺字하여 유배보내는 것으로 군적을 보충함으로써 죄인과 군인 둘다 상군의 병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상군의 죄인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금군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남송군대의 주력인 둔주대군 역시 刺字된 죄인을 통해 병사자원을 확충하기도 하였다.<sup>95)</sup>

또, 군대의 입묵과 죄인의 刺字가 확연한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상군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刺字한 글자는 그 형식과 내용이 죄인의 글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얼굴의 刺字는 군인과 보통 죄인이 근접했고, 따라서 군인과 刺字를 받은 죄인이 크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96)</sup> 아

92) 周瑞熙, 앞의 글, 105면.

9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군인과 죄인의 刺字하는 부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얼굴(뺨·이마)	귀	손
죄인	강도, 3번 장형죄 범한 자	도적, 유형, 도형, 장형	.
군인	상군, 금군, 번병, 근왕병	번병	상군, 금군, 향병, 둔주대군

94) 魏峰, 앞의 글, 47면.

95) 예를 들어, 남송의 陳傅良이 관리하는 桂陽軍의 병사 74명을 분석하면 竊盜 25명, 強盜 12명, 劫盜 8명, 모두 저지른 자 1명이고 그 외 28명만이 보통 군인이었다(魏峰, 앞의 글, 48면).

96) 魏峰, 앞의 글, 49면. 여러 자료들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송대 군인의 지위는 아주 낮았고 젊은이들은 군대에 모병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한다. 군사력의 약세로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렸던 송조의 입장을 고려하면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군인의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죄인의 刺字와 유사한 군인의 刺字를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나 상소를 통해 볼 때 송조도 이를 일정부분 인식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刺字를 한 죄인과의 차별성은 부각시키지 못한 것 같다.

래에서 군인과 죄인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를 살펴보자.

송대의 군대는 도망간 군인의 얼굴에 ‘逃走’ 두 글자를 새기고 이로써 징계를 하였다. 얼굴에 逃走라는 글자를 새기면 사병은 이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휘종(徽宗) 政和 5년(1115)에는 돈을 주조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逃走刺手背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돈을 주조하는 군인이 도주하면 ‘逃走’ 두 글자를 손등에 새기는 법이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청명집』에도 나타난다.

이 두 놈은 뻔뻔스럽게 臺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監卒에게 번번히 뇌물을 보내 임안부(양절서로)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서 본사는 지현에 근무평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순검·현위에게 감독을 맡겨 소환·체포하게 하고, 각자의 가족을 구속하고, 호송을 맡은(왕신을) 配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포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만일 지금 도주를 용서하면 내일은 마음대로 휘저으며 돌아와 보복으로서 틀림없이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쁜 짓을 저지른 서리는 모두 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관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져 버린다.(중략) 정위는 척장 15대로 결정하고 다시 1000리를 더하여 배류하며 영원히 상음체에 구속한다. 장근은 척장 17대로 결정하고 2000리에 배류하고 영원히 이양체에 구속한다. 매월 생사를 보고하고 동시에 조법에 의거해서 ‘徒走’라는 문자를 刺字하라.<sup>97)</sup>

배리인 정위와 장근은 현내의 백성들을 수탈한 죄로 체포되어 배류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배류지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잡혔고 그들은 조법에 의거해서 ‘逃走’라는 문자를 刺字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逃走’라는 문자를 刺字당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배류되었다고 했으므로 아마도 그 배류지는 뇌성부대나 본성부대였을 것이다.

97) 『清明集』 卷11 人品門, 公吏, 「責縣嚴追」, “此二賊者, 乃敢蔑視臺府, 重賂監卒, 竄走臨安, 致本司索知縣批書, 督巡, 尉追捕, 拘各人家屬, 將押送人決配, 方始捉獲. 其意不過謂今日竄走, 明日即可回縣, 報復害民. 如此則罪惡貫盈之吏皆可以竄走, 而無如之何, 是不復有官府矣! … 程偉決脊杖十五, 再加配千里, 永銷棠陰寨, 張謹決脊杖十七, 配二千里, 永銷利陽寨, 月具存亡申, 並依條刺逃走字”



따라서 그들은 뇌성이나 본성의 군인으로 배속되었을 것이기에 도망간 군인에게 가하는 ‘逃走’라는 刺字를 받게 된 것이다. 둘째로 그들이 뇌성부대나 본성부대의 군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사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죄인이 도주할 때도 ‘逃走’라는 글자를 刺字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도망간 군인에 대한 ‘逃走’라는 刺字에 입각해서 유사한 사안으로 취급해 비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군인과 죄인에 관한 규정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둘의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남송대에는 刺字에 처하는 범죄 조항이 증가하여 刺字에 처해지는 죄인이 많았으며 군인 역시도 많았기 때문에 刺字의 낙인적 효과는 악화되었다고 보여진다. 편관이나 감장과 같은 형벌에도 刺字가 행해졌다는 것은 刺字가 그만큼 널리 활용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刺字의 중형적이고 엄벌적인 기존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이자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결국 刺字를 받은 경리가 재임용되는 사례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송대에는 국가적 형벌체계로서의 刺字를 제외하고 개인적 응징의 수단으로 刺字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주인이 사사로이 노비를 식별하기 위해 노비의 몸에 刺字하는 것을 금지했고 또한 종실이나 승려의 刺字도 금지했다. 진종(眞宗) 咸平 6년(1003) 이전, 사서의 집에는 어린 종이 죄를 범하면 한번씩 사사로이 얼굴에 刺字를 했는데 이에 대해 진종은 “어린고용양민이 도둑질한 것이 5관 이상이면 杖脊黥面하고 配牢城, 10관 이상이면 5백리 밖에 배류하고, 20관 이상이면 주재하여 사사로이 刺字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98)</sup> 그런데 『청명집』에는 재지세력가에 의한 자의적 刺字의 예가 보인다.

지금 駱一飛는 관리를 소송하려고 조정에 출두했는데, 그 실제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자는 “惡黨一家”라고 할만한 자이고, 상당한 악행을 거듭해 왔다. 즉 일비는 남의 재물을 빼앗고 민심을 혼란하게 했다고 해서 “杖罪 후 編官”시키고, 그 장남도 요교

98) 朱瑞熙, 앞의 글, 106면.

(妖教)를 선전해 양민을 속였다고 해서 “장죄 후 편관”, 차남은 한층 더한 악당으로, 민중에게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刺靑을 실시하기까지 했으므로 이 자는 “脊杖·刺配”시켰다.<sup>99)</sup>

위의 판어에서는 향촌의 호강인 낙일비 부자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낙일비의 차남은 백성을 잡아와서 사사로이 刺字까지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해 낙일비의 차남은 형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고 처장 된 뒤에 刺字하고 배류되었다. 남송대 재지실력자인 호황은 향촌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사로이 고문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였는데 위의 판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私的으로 刺字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송대 치안 약화로 인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지방 세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한편, 刺字의 남발로 인해 刺字의 범죄예방효과도 약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또한 刺字에 대한 남송인의 인식도 변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한편 주서희(周瑞熙)는 송대 일부 백성들이 刺字와 문신을 즐겨했다고 하면서<sup>100)</sup> 남송대에 전문적으로 刺字와 문신을 하는 공인을 ‘針筆匠’이라 한다고 하였다.<sup>101)</sup> 이러한 풍습을 통해볼 때, 형벌로서 刺字의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刺字를 받은 죄인들이 국가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그들이 향촌 사회에서 또다시 예전과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남송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黥吏를 재임용하는 것은 실무행정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기존의 刺字가 가진 엄형적이고

99) 『清明集』 卷12 懲惡門, 豪橫, 「治豪橫懲理姦自是兩事」, “駱一飛父子凶德參會, 罪惡貫盈. 一飛以強取民財, 誑惑民聽, 杖罪編管. 其長子又以鼓倡妖教, 欺騙良民. 杖罪編管. 其次子又加甚焉, 甚至自將百姓行杖刺環, 亦遭決脊刺配”

100) 朱瑞熙 앞의 글, 105면.

101) 명대의 소설 『水滸傳』에는 刺字를 入墨師(文墨匠人, 文筆匠)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며, 刺字를 실시하는 것을 ‘金印’을 찍는다고 하였다(仁井田陞, 앞의 책, 667면에서 재인용).

위하적인 인식이 점차 완화되어갔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刺字에 관해 완화된 사회적 인식은 刺字를 당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형벌로서 일반예방적 성격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刺字에 처해진 사람이 많아진 원인은 먼저 刺字에 처해지는 범죄 조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남송대 刺字에 해당하는 범죄조항의 급격한 증가는 당시 무거운 엄형을 확대해서라도 범죄를 막아야만 했던 남송의 심화된 계층 간 갈등이 전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죄인의 刺字와 유사한 입묵을 한 다수의 군인, 민간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刺字, 그리고 일반인들의 刺字와 문신 풍습 등도 남송대 刺字를 한 사람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남송대 刺字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변화시켰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刺字에 관한 남송인의 엄형적 인식을 약화시켜 송초에 의도했던 강력한 범죄예방 효과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편판이나 감장과 같은 형벌과 함께 刺字가 행해졌다는 것 역시, 刺字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고 이는 결국 엄형주의의 관점에서 刺字를 부활시킨 송초의 법의도가 변질된 것이라 하겠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청명집』에 나타나는 판어를 중심으로 송대에 공식적인 형벌체계로서 부활된 刺字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오대시기에 군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에서 실시되었던 입묵의 영향으로 송대에는 형벌로서의 刺字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사형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시행하는 刺配의 일부분을 구성했던 刺字는 진종과 신종대를 거치면서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남송대에 이르러 刺字의 대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만들어졌다.

『청명집』에서의 刺字는 형벌의 위협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벌이었으며 따라서 판관들은 刺字를 응징적이고 威嚇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刺字에 처해지는 범죄는 송초에 살인, 절도, 강도와 같은 것이었으나 남송대가 되면 조항이 확대되어 납세독촉이나 자의적 징세, 뇌물수수, 횡령, 직무유기와 같은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청명집』 판어에서 刺字에 처해진 자들의 신분 혹은 직업적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절대다수를 차지한 직업이 서리로 나타났다. 刺字에 처해진 서리는 黥吏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낮은 봉록에 의한 구조적 모순과 비도덕적인 소양으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판관은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차원에서 刺字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刺字를 받은 죄인들이 국가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그들이 향촌 사회에서 또다시 예전과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남송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黥吏를 재임용하는 것은 실무행정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기존의 刺字가 가진 엄형적이고 威嚇的인 인식이 점차 완화되어갔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刺字에 관해 완화된 사회적 인식은 刺字를 당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형벌로서 일반예방적 성격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刺字에 처해진 사람이 많아진 원인은 먼저 刺字에 처해지는 범죄 조항의 증가로 刺字에 처해지는 죄인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죄인의 刺字와 유사한 入墨을 한 다수의 군인, 민간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적인 刺字, 일반인의 刺字와 문신 풍습 등과 관련이 있다. 편관이나 감장과 같은 다소 가벼운 형벌과 함께 刺字가 행해졌다는 것은 刺字가 가진 위협적 이미지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고, 이는 결국 엄형주의의 관점에서 刺字를 부활시킨 송초의 법의도가 변질된 것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名公書判清明集』, 『宋會要輯稿』, 『宋史』, 『慶元條法事類』, 『五代會要』, 『文獻通考』.

### 2. 저서

高橋芳郎, 『宋代の士人身分』, 北海島大學國書刊行會, 1988.

郭東旭, 『宋代法制研究』, 河北大學出版社, 1997.

\_\_\_\_\_, 『宋朝法律史論』, 河北大學出版社, 2001.

郭沫若主 編, 『中國史稿地圖集』下, 中國地圖出版社, 1990.

金池洙, 『傳統 中國法の 精神-情·理·法の 中庸調和-』, 全南大學校出版部, 2005.

內河久平, 「宋初地方官昇進の過程-候選制度について」, 『東洋法事の探究』, 1989.

徳永洋介, 「南宋時代の紛争と裁判」,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 同朋舎, 1993.

島田正郎, 임대희 외 譯,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

梅原郁, 「唐宋時代の法典編纂-律令格式と勅令格式-」,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 同朋舎, 1993.

裴淑姬, 『宋代科擧制度와 官僚社會』, 三知院, 2001.

배중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富谷至, 임병덕 외 譯, 『유골의 증언-고대중국의 형벌』, 서경문화사, 2004.

西田太一郎, 친진호 외 譯, 『중국형법사연구』, 신서원, 1998.

薛梅卿, 『兩宋法制通論』, 法律出版社, 2002.

梁鍾國, 『宋代士大夫社會研究』, 三知院, 1996.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刑法』, 東京大學出版會, 1959.

\_\_\_\_\_,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97.

張國華, 임대희 외 譯, 『중국법률사상사』, 아카넷, 2003.

張晉藩, 한기중 외 譯, 『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鄭克, 김지수 譯, 『折獄龜鑑』, 소명, 2001.

周 密, 『宋代刑法史』, 法律出版社, 2002.

曾我部靜雄, 「宋代の刺配について」, 『中國律令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71.

黃錦君, 「宋代典籍中的“刺”, “招刺”等析義」, 『西南民族大學學報』 26, 2005.

Brian E. Mcknight, *The Quality of Mercy*,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_\_\_\_\_, *Law and Order in Su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3. 논문

高橋芳郎, 임대희 譯, 「名公書判清明集」, 『法史學研究』 27, 韓國法史學會, 2003.

島善高, 「唐代量移考」, 『東洋法事の探究』, 1989.

閔厚基, 「議請減贖·官當의 기원과 변화」, 『中國史研究』 37, 中國史學會, 2005.

박영철 譯, 「譯註宋史刑法志」, 『中國史研究』 19, 中國史學會, 2003.

\_\_\_\_\_, 「訟師의 출현을 통해 본 宋代 中國의 법과 사회」, 『法史學研究』 27, 韓國法史學會, 2003.

\_\_\_\_\_, 「『名公書判清明集』의 版本과 讀解」, 『역사문화연구』 22,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05.

辻正博, 「宋初의 配流と 配軍」, 『東洋史研究』 52-3, 東洋史研究會, 1993.

\_\_\_\_\_, 「宋代編管制度考」, 『東洋史研究』 61-3, 東洋史研究會, 2002.

申泰光, 「北宋前期의 中央胥吏」, 『東國史學』 23, 東國大學校出版社, 1989.

\_\_\_\_\_, 「南宋前期의 胥吏」, 『東國史學』 27, 東國大學校出版社, 1993.

\_\_\_\_\_, 「南宋後期의 胥吏」, 『지촌김갑주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4.

安俊光, 「北宋軍의 充員制度」, 『歷史教育論輯』 17, 歷史教育學會, 1992.

\_\_\_\_\_, 「北宋의 蕃兵에 대하여」, 『慶北史學』 15, 慶北史學會, 1992.

양중국, 「宋代 讀書人層의 膨脹과 士大夫의 概念變化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 33, 東洋史學會, 1990.

魏 峰, 「從刺字看宋代軍制」, 『史學月刊』 2005. 9, 2005.

滋賀秀三, 「刑罰의 歷史 - 東洋 -」, 『刑罰의 理論と 現實』, 岩波書店, 1972.

戴建國, 「宋代加役流刑辨析」, 『中國史研究』, 中國史研究雜誌社, 2003.

全永燮, 「『위서(魏書)』 형벌지(刑罰志)역주」, 『中國史研究』 11, 中國史學會, 2000.

조복현, 「宋代 官僚社會에서 賂物授受가 盛行한 背景과 士風」, 『東洋史學研究』 95, 2006.

佐立治人, 「『清明集』의 「法意」と 「人情」」, 『中國近世의 法制と 社會』, 同朋舍, 1993.

周瑞熙, 「宋代的刺字和文身習俗」, 『中國史研究』 1998. 1, 中國史研究雜誌社, 1998.

- 曾我部靜雄, 「宋代軍隊の入墨について」, 『東洋學報』 24, 1943.
- 陳癸鎬, 「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 川村康, 「宋代折杖法初考」, 『早稻田法學』 65-4, 1990.
- \_\_\_\_\_, 「建中3年重杖處死法考」, 『中國司法と日本律令制』, 東方書店, 1992.
- \_\_\_\_\_, 「政和 八年 折杖法考」, 『裁判と法の歴史的展開』, 敬文堂, 1992.
- \_\_\_\_\_, 「慶元條法事類と宋代の法典」, 『中國法制史－基本資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93.
- 허부문, 「한·위·진의 육형논쟁－정치·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中國史研究』 15, 中國史學會, 2001.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of Sung(宋) China\* — Based on 『Ming-Kung-shu-p'an-ching-ming chi』—

Nam, Hyun-Je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 as a major part of punishment system of Sung China. The study is based on texts of a judicial decisions such as 『Ming-Kung-shu-p'an-ching-ming chi(名公書判清明集)』 during Southern Sung China(南宋).

Sung China officially used tattoo(刺字) as a mark of punishment, influenced by the Five Dynasties(五代) which used tattoo(刺字) to prevent soldiers from deserting their barracks. Originally,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used a part of Ci-pei(刺配) punishment to those who were exempt from capital punishment. During the Northern Sung China(北宋), tattoo punishment(刺字刑) had developed with rough regulations. However, it did not had clear and specific regulations such as size, body parts until Southern Sung China period.

Referred to 『ching-ming chi(清明集)』,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used as a mark of fear. In the early Sung China,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given to heavy criminals such as murderers, thieves, and robbers. However, it was more widely used for crimes such as selfishly collection of tax, bribery, embezzlement, and neglect of duty. In addition, 『ching-ming chi(清明集)』 shows that the social classes who received Tattoo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anuary, 2007.

\*\*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nishment(刺字刑) most was Xuli(胥吏). Tottoo-punished Xuli(黥吏) commit a lot of crimes because of lower payments and immorality and faced heavy punishments such as Tattoo punishment(刺字刑). However, Tattoo punished-criminals were not controled well by the government and they gradually could work again as Xuli(胥吏) in local regions. This reflects social trends of the Southern Sung China. That is, although tattoo-punished Xulis(黥吏) were re-employed for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reasons, fear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relieved because there were a growing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The rise of the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was caused by the expansion of criminal conditions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The number of soldiers with tattoo also increased. Furthermore, tattoo was becoming popular among average people. In the meantime,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later used together with light punishments such as Pien-kuan(編管), chang-hsing(杖刑). This demonstrates that fear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was greatly reduced, which led to change of the sprit of law of early Sung China based on severe punishment.

In conclusion, during the Southern Sung China, social recognition of Tattoo punishment was chang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attoo-punished people after expansion of conditions of tattoo punishment(刺字刑). This shows that the sprit of low of early Sung China based on severe punishment became relieved and changed in Southern Sung China. In addition, the fact that most of the tattoo-punished criminals were from Xuli(胥吏) class reflects negative attitudes of a ruling class toward Xuli(胥吏) class.

**[Key Words]** Ming-Kung-shu-p'an-ching-ming chi(名公書判清明集), tattoo punishment(刺字刑), Tottoo-punished Xuli(黥吏)